

경쟁법제 BRIEF

(제 12 호)

1998. 5.15.

일본의 「공정취인위원회의 심사 및 심판규칙」

(1953년 10월 10일, 공취위규칙 제5호)

개정 : 1962년 10월 1일. 공취위규칙 제6호
1971년 8월 28일, 공취위규칙 제3호
1977년 2월 2일, 공취위규칙 제3호
1980년 3월 29일, 공취위규칙 제1호
1981년 6월 13일, 공취위규칙 제3호
1988년 12월 19일. 공취위규칙 제3호
1989년 4월 27일. 공취위규칙 제2호
1994년 9월 29일. 공취위규칙 제7호
1996년 6월 14일. 공취위규칙 제4호

사적독점의금지및공정거래의확보에관한법률(1947년 법률 제54호)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취인위원회의 심사 및 심판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공정취인위원회의 심사 및 심판에 관한 규칙

[공정취인위원회의 심사 및 심판에 관한 규칙 목차]

제1장 통칙[1조 - 8조]

제2장 심사절차

제1절 심사일반 [9조 - 19조]

제2절 권 고 [20조·21조]

제2절의2 납부명령 [21조의2 - 21조의5]

제3장 심판절차

제1절 위원회, 심판관 및 심판관계자 [25조 - 32조]

제2절 심판의 진행 [33조 - 65조]

제3절 심결안 및 심결 [66조 - 72조]

부칙

제1장 통칙

이 규칙의 취지·정의

제1조

- ① 공정취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행하는 심사절차 및 심판절차에 대해서는 사적독점의금지및공정거래의확보에관한법률 [1947년 법률 제54호. 이하 「법」이라 하고,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 (1949년 법률 제181호) 제108조(중소기업단체의조직에관한법률 (1957년 법률 제185호) 제91조제2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당경품류및부당 표시방지법(1962년 법률 제134호) 및 사적독점의금지및공정거래의 확보에관한법률 제46조제2항의 심사관의지정에관한정령(1953년 정령 제264호. 이하 「심사관의지정에관한정령」이라고 한다)에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법 제66조제1항 및 부당경품류및부당표시방지법 제10조제6항에 규정하는 심판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 ②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동일한 것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기간의 계산

제2조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행정기관의휴일에관한법률 제1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것을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용 어

제3조

- ① 심사 및 심판의 절차에 있어서는 일본어를 사용한다.
- ② 일본어가 통하지 않는 자에게 진술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을 하도록 한다.

송 달

제4조

위원회의 직원은 송달을 받을 자가 출두한 경우에는 서류를 그 자에게 교부하여 송달할 수 있다.

공무원의 서류

제5조

- ① 공무원이 작성한 서류에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월일을 기재하여 서명날인(署名捺印)하고 그 소속 관공서를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서류에는 매 장마다 계인(契印)을 하여야 한다.

기명날인의 대응

제5조의2

전조(前條)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서명날인에 대신하여 기명날인(記名捺印)하고 계인에 대신하여 이것에 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무원의 서류의
정정

제6조

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함에는 문자를 개변(改變)하여서는 안 된다. 문자를 더하거나 삭제 또는 난(欄) 바깥에 기입한 때에는 이것에 인인(認印)하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삭제한 부분은 이것을 읽을 수가 있도록 자체(字體)를 남겨놓아야 한다.

공무원 이외의 자
의 서류

제7조

공무원 이외의 자가 작성한 서류에는 연원일을 기재하여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서명날인의 특칙

제8조

- ① 서명날인하여야 할 경우,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타인이 대서(代書)하도록 하고, 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지인(指印)하여야 한다.
- ② 타인이 대서하도록 한 경우에는 대서한 자가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장 심사절차

제1절 심사일반

심사관에 의한
심사절차의 개시

제9조

- ① 사무총국 심사국장(이하 「심사국장」이라 한다)은 사건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사실을 접수하였을 때 심사여부에 관한 의견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보고에는 다음 사항을 가능한 한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
 - 1. 단서(端緒)
 - 2. 사실의 개요
 - 3. 관계법조
-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사건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법 제46조제2항 및 심사관의지정에관한정령에 의하여 심사관을 지정하고 심사관에게 법 제46조제1항의 처분 기타 필요한 조사를 행하여 사건을 심사하도록 한다.

(역자 주) 심사관 지정은 사무국 심사국이나 지방사무소 또는 그 지소의 직원 중에서 사건심사를 행하고 심판절차를 행하는데 필요한 법률 및 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함(독금법 제46조제2항의 심사관지정에 관한 정령)

심사관의 강제조사

제10조

- ① 심사관이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두를 명하여 심신(審訊)하는 경우에는 출두명령서, 이들로부터 보고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보고명령서, 이들에게 서류

	<p>기타의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출명령서, 감정인에게 출두를 명하여 감정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감정명령서를 송달하여 이를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전항의 문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심사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대방의 성명 2. 요구사항 3. 출두 또는 제출하여야 할 일시 및 장소 4.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법률상의 제재
<p>심사관의 신분증명서</p>	<p>제11조</p> <p>① 법 제46조제3항의 증명서에는 그 신분을 밝히고 심사관의 사진을 부착하며 한편 검사를 방해한 경우에 대한 법률상의 제재를 기재하여야 한다.</p> <p>② 증명서는 양식 제1호와 같다.</p>
<p>심신조서</p>	<p>제12조</p> <p>심사관은 법 제4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사건관계인 및 참고인을 심신(審訊)한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 이것을 공술자(供述者)에게 읽어 주거나 또는 공술자에게 열람하도록 하여 틀림이 있는지 어떤지를 묻고 공술자가 증감변경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공술을 기재하여야 한다.</p> <p>② 공술자가 조서에 잘못이 없다고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이것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공술자가 이것을 거절할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할 수 있다.</p>
<p>감정서</p>	<p>제13조</p> <p>심사관은 법 제4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감정인에게 감정을 하도록 한 때에는 감정서에 의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유치조서</p>	<p>제14조</p> <p>① 심사관은 법 제4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출물건을 유치(留置)한 때에는 유치조서(留置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전항의 조서에는 사건명, 유치물건의 품목, 소유자 및 제출자의 성명과 주소와 함께 처분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p> <p>③ 유치를 한 때에는 유치물의 품목을 기재한 목록을 작성하고 이것을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p> <p>④ 소유자 또는 제출자로부터 청구가 있는 때에는 목록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p>
<p>유치물의 환부· 가환부</p>	<p>제15조</p> <p>① 유치물로서 유치의 필요가 없게된 것은 사건의 종결을 기다리지 않고서 반환하여야 한다.</p> <p>② 유치물은 소유자 또는 제출자의 청구에 의해 임시로 반환할 수 있다.</p>

<p>검사조서</p>	<p>제16조</p> <p>① 심사관은 법제46조제1항제4호의 처분을 한 때에는 검사조서(檢査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전항의 조서에는 사건명, 검사의 목적, 검사의 연월일시, 검사에 입회한 자의 서명 및 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p>
<p>조서에의 인용</p>	<p>제17조</p> <p>조서에는 서면, 사진 기타 적당한 것을 인용하고 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할 수 있다.</p>
<p>심사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p>	<p>제17조의 2</p> <p>①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심사관이 행한 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처분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의를 신청한 처분의 철폐, 취소 또는 변경을 심사관에게 명하여야 한다.</p> <p>③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이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심사보고서</p>	<p>제18조</p> <p>① 심사관이 심사를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국장을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심사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서 2. 심사경과 3. 사실의 개요 4. 관계법조 5. 심사관 의견
<p>보고자에 대한 통지</p>	<p>제19조</p> <p>①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 경우에 행하는 것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고를 한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법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행위를 하고 있거나 또는 한 자의 성명과 명칭 3. 법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 시기, 장소 기타의 사실 <p>② 전항의 통지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한 경우에 각각 그 취지를 기재한 문서에 의해 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동일의 보고에 관계된 사건에 대해 제1호 또는 제2호의 통지를 한 때에는 그 후의 통지는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p>

1. 당해 사건에 대해 심결을 한 경우
 2. 당해 사건에 대해 납부명령을 한 경우(당해 납부명령에 관계된 사건에 대해 심판절차를 개시한 경우를 제외한다)
 3. 당해 사건에 대해 배제명령을 한 경우(당해 배제명령에 관계된 행위에 대해 심판절차를 개시한 경우를 제외한다)
 4. 당해 사건에 대해 심판절차를 개시한 경우
 5. 당해 사건에 대해 전 각 호에 열거한 어느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으로 한 경우
- ③ 전항의 문서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해 기재하여야 할 사항 외에 적당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역자 주) 통지양식은 사무처리요령에 나와 있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심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과징금납부명령」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심판개시결정」

「법률상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디다만, 독점금지법에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경고하였습니다」

「법률상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디다만, 독점금지법에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하였습니다」

제2절 권 고

권 고

제20조

①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또한 위원장 및 의결에 참가한 위원이 서명날인한 권고서의 등본을 송달하여 이것을 행하여야 한다.

1. 사실 및 법령의 적용
2. 위반행위를 배제하거나 또는 위반행위가 배제된 것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

② 전항의 권고서 등본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첨부한다.

1. 권고를 응낙할 것인지 아닌지를 통지해야 할 기간
2. 권고를 응낙한 때에는 위원회가 권고와 동 취지의 심결을 한다는 뜻

권고의 응낙여부의 통지

제21조

① 권고를 받은 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문서에 의해 그 응낙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응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절의2 납부명령

납부명령전의
통지

제21조의 2

① 위원회가 납부명령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송달하는 것으로 한다.

1. 납부를 명하고자 하는 과징금의 금액, 계산의 기초 및 과징금에 관련된 위반행위
2. 위원회에 대해 전호에 열거한 사항에 대해 문서에 의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 및 그 기간

②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항제2호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의견진술등의
방식

제21조의 3

① 전조 제1항의 문서의 송달을 받은 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위원회에 대해 기명날인한 문서로서 동항제1호에 열거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공술을 증거로 제출한 때에는 공술자가 서명날인한 문서로서 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해 증거를 제출한 때에는 증명하여야 할 사항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두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과징금납부명령서

제21조의4

① 과징금납부명령서에는 위원장 및 의결에 참가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과징금납부명령서의 등본에는 그 도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대해 당해 사건에 대해 심판절차의 개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한 통지서를 첨부한다.

심판절차 개시의
청구

제21조의5

법 제48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심판절차의 개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과징금 납부명령서의 등본이 도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식 제2호에 의한 심판절차개시청구서 정부(正副) 2통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심판개시결정

심 판 개 시 결 정 의
통지서

제22조

심판개시결정서의 등본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첨부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판기일 및 장소 2.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할 기간 3. 피심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심판기일에 출두해야 한다는 취지 4. 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결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절차가 개시되는 사건을 제외)
답변서 제출기간 의 연장	<p>제23조 위원회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답변서의 기재사항	<p>제24조</p> <p>① 답변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피심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에 대신하여 기명날인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심인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직업 및 주소 2. 대리인의 성명, 직업 및 주소 3. 사건명 4. 사실에 대한 인부(認否) 5. 피심인의 주장 및 증거 등의 방어방법 6. 부속서류의 표시 <p>② 피심인은 답변서에 있어서도 법 제53조의3에 규정하는 동의심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p>
<h3>제3장 심판절차</h3>	
<h4>제1절 위원회, 심판관 및 심판관계자</h4>	
위원회가 행하는 심판	<p>제25조 위원회가 심판절차를 행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및 2인 이상의 위원이 출석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p>
심판관이 행하는 심판	<p>제26조 위원회는 심판절차를 개시한 후 법51조의2의 규정에 의해 심판관에게 심판절차를 수행하도록 할 때에는 당해 사건의 담당 심판관을 지정하고 또한 그 성명을 피심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해 주어야 한다.</p>
심판관의 직무권한	<p>제27조</p> <p>① 심판관은 법제51조의 2의 규정 및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판절차에 관해 위원회가 가지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한다.</p> <p>② 심판관은 그 직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또한 독립하여 행사하여야 한다.</p>

심판의 사무를
행하는 직원

제28조

- ① 위원회는 그 직원으로 하여 심판에 관한 사무를 행하도록 한다.
- ② 전항의 직원은 위원장 또는 심판관의 명을 받아 심판절차에 있어서 조서 기타 서류의 작성, 보관 및 송달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심사관

제29조

심사관은 심판개시 결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심판기일에 입회하여 사실상 및 법률상의 진술을 하고 증거의 신청을 하거나 증거조사에 입회하는 것 외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대리인

제30조

- ① 변호사인 대리인의 권한은 문서에 의해 이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문서에는 대리인의 소속변호사회의 명칭 및 대리인의 사무소를 기재하고 또한 대리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③ 피심인은 변호사이외의 자를 대리인으로 하는 취지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을 기재하고 또한 피심인과의 관계 기타 대리인으로서 적당한지 여부를 알기에 족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위원회 또는 심판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전항의 문서에는 대리인의 권한 및 그 범위를 명확하게 표시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 또는 심판관은 제3항의 신청에 대해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⑥ 피심인이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문서에 의해 그 취지를 위원회 또는 심판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참가를 위한 심신
및 결정

제31조

- ① 위원회 또는 심판관은 법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피심인 및 제3자를 심신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의해 이것을 행할 수 있다.
- ② 위원회 또는 심판관은 제3자를 당사자로서 참가시키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심인 및 당해 제3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참가인의 행위

제32조

- ① 참가인은 심판절차에 있어서 사실상 및 법률상의 진술을 하거나 또는 증거신청 기타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2절 심판의 진행

심판정

제33조

기일에 있어서 심판은 위원회의 심판정에서 행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사건의 심판에 적당한 장소를 심판정으로 정할 수 있다.

심판의 참석자

제34조

- ① 위원회가 심판을 행하는 기일에는 위원장 및 2인 이상의 위원과

피심인 또는 대리인의 불출석	<p>함께 심판사무를 행하는 직원이 참석하고 또한 심사관이 출석을 하여 심판을 개시한다.</p> <p>② 심판관이 심판을 행하는 기일에는 심판관 및 심판사무를 행하는 직원이 참석하고 또한 심사관이 출석하여 심판을 개시한다.</p> <p>③ 피심인 또는 대리인은 심판기일에 출석하는 것으로 한다.</p>
심판기일의 지정·연기 및 변경	<p>제35조 피심인 또는 대리인은 심판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분명히 하여 그 뜻을 위원장 또는 심판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36조 ① 제2회 이후의 심판기일은 위원장 또는 심판관이 정한다. ② 피심인 또는 대리인에 대한 심판기일의 통지는 출두일시, 장소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송달함으로써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기일에 출두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또는 심판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해 심판기일(제1회 심판기일을 포함한다)을 연기 또는 변경할 수 있다.</p>
심판의 지휘 및 질서유지	<p>제37조 ① 심판기일에 있어서 심판은 위원장 또는 심판관이 지휘한다. ② 위원장 또는 심판관은 심판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변론의 제한	<p>제38조 위원장 또는 심판관은 심사관, 피심인 또는 대리인의 심신 또는 진술이 이전에 행한 심신 혹은 진술과 중복되거나 사건과 관계없는 것일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p>
석명권·질문권	<p>제39조 ① 위원장, 위원 또는 심판관은 사건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해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심사관, 피심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또는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 ② 심사관, 피심인 또는 대리인은 상대방 진술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심판관에게 질문을 촉구하거나 또는 위원장·심판관의 허가를 얻어 직접 상대방에게 질문할 수 있다.</p>
석명의 준비명령	<p>제40조 위원장 또는 심판관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관, 피심인 또는 대리인에게 석명(釋明)을 구할 사항을 지시하고 심판기일 전에 준비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준비절차	<p>제40조의2 위원장 또는 심판관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건의 쟁점</p>

	<p>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심사관 및 피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출두를 요구하여 준비절차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방법 대신 또는 이를 보충하기 위해 심사관 또는 피심인 혹은 대리인에게 서면을 제출시킬 수 있다.</p>
모두절차	<p>제41조</p> <p>① 심사관은 우선 심판개시결정서에 따라 사건의 개요를 진술하여야 한다.</p> <p>② 피심인 또는 대리인은 전항에 따른 심사관의 진술이 끝난 후 답변서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증거조사	<p>제42조</p> <p>① 증거조사는 전조(前條)의 절차가 끝난 후 이를 행한다.</p> <p>② 증거조사는 이 규칙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판기일에 행하여야 한다.</p>
증거조사의 청구· 직권증거조사	<p>제43조</p> <p>① 심사관, 피심인 또는 대리인은 증거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 또는 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p>
증거조사의 청구순서	<p>제44조</p> <p>① 심사관이 먼저 사건의 심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청구하여야 한다.</p> <p>② 피심인 또는 대리인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후 사건의 심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취조를 청구할 수 있다.</p>
증거조사의 청구방식	<p>제45조</p> <p>증거조사의 청구는 증거방법 및 이것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항을 표시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p>
참고인심신의 신청	<p>제46조</p> <p>참고인 심신의 신청은 참고인의 성명, 주소, 직업 및 심신사항을 분명히 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p>
서증의 신청방식	<p>제47조</p> <p>① 서증(書證)의 신청은 문서를 제출하거나 이것을 소지한 자에게 그 제출을 명할 것을 신청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p> <p>② 문서제출의 신청은 다음의 사항을 분명히 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서의 표시 2. 문서의 취지 3. 문서의 소지자 4. 증명할 사실 <p>③ 문서의 제출은 위원장 또는 심판관의 허가를 얻은 경우 사본으로서 원본을 대신할 수 있다.</p>

검증의 신청	<p>제48조 검증(檢證)의 신청은 검증의 목적을 표시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p>
감정의 신청	<p>제49조 감정(鑑定)의 신청은 감정사항을 분명히 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p>
증거결정	<p>제50조 증거조사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 또는 심판관은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호출장	<p>제51조(참고인, 감정인) ① 참고인의 호출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한편 위원회 또는 심판관은 기명날인하여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출두일시 및 장소 2. 사건명 3. 심신사항 4. 출두하지 않을 경우 법률상의 제재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항의 규정은 감정인 또는 피심인 본인의 호출장에 준용한다. ③ 참고인, 감정인 또는 피심인 본인이 심판정에 있을 때에는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접 심문하거나 감정시킬 수 있다.</p>
참고인등의 취조방법	<p>제52조 ① 참고인, 감정인 또는 피심인 본인에 대해서는 위원장, 위원 또는 심판관이 먼저 심신한다. ② 심사관, 피심인 또는 대리인은 전항의 심신이 끝난 후 위원장 또는 심판관에게 알린 후 그 참고인, 감정인 또는 피심인 본인을 심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참고인, 감정인 또는 피심인에 대한 취조가 심사관, 피심인 또는 대리인의 청구와 관련있는 경우 청구를 한 자가 먼저 심신한다. ③ 위원장 또는 심판관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사관 및 피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 전 2항의 심신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p>
인정심신	<p>제53조 참고인, 감정인 또는 피심인 본인에 대해서는 우선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개별심신	<p>제54조 ① 참고인, 감정인 또는 피심인 본인은 각자 별도로 이것을 심신하여야 한다. ② 후에 심신하여야 할 참고인 또는 감정인이 재정(在廷)한 때에는 퇴정하도록 할 수 있다.</p>

대 질	<p>제55조 위원장 또는 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참고인, 감정인 혹은 피심인 본인을 각각 상호 또는 참고인과 피심인 본인을 대질(對質)시킬 수 있다.</p>
선 서	<p>제56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선서는 심신 전에 하여야 한다. ② 선서는 선서서(宣誓書)에 의해 하여야 한다. ③ 참고인의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사실을 진술하고 어떠한 일도 숨기지 않고 또는 어떠한 일도 덧붙이지 않는 것을 서약하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감정인의 선서서에는 양식에 따라 성실하게 감정할 것을 서약하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 또는 심판관은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게 선서서를 낭독시키고 한편 이것에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하게 행하여야 한다.
벌칙의 고지	<p>제57조 선서를 한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게는 심신전에 허위의 진술 또는 허위의 감정은 법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해 죄가 되는 취지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진술 또는 감정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해 죄가 되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p>
심사관등의 의견진술	<p>제58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증거조사가 종료한 후 심사관은 사실 및 법령적용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피심인 또는 대리인에게는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동의심결의 신청	<p>제59조 심판관에 의한 심판절차중에 있어서 동의심결의 신청은 심판관을 경유하여 행하여야 한다.</p>
심판기일 외에 있어서 증거조사	<p>제60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위원회 또는 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심판기일외에 있어서 증거조사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심사관 및 피심인에게는 이것에 입회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심판관은 전항의 증거조사를 행한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서에는 증거조사의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심판의 사무를 행하는 직원이 서명날인하고 한편 위원장 또는 심판관은 이것에 인인(認印)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조서는 심판기일에 있어서 이것을 제시하여야 한다.
심판의 분리·병합 및 재개	<p>제61조 위원회 또는 심판관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청</p>

심판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구에 의해 심판절차를 분리하거나 혹은 병합하고 또는 종결한 심판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

제61조의2

제17조의2의 규정은 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해 심판관이 한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처분에 대해 이것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심사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심판관」으로 바꿔 읽도록 한다.

제62조

① 심사관, 피심인 또는 대리인은 심판관이 행한 심판절차에 관한 처분(전조의 처분을 제외한다)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지체없이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7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심사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심판관」으로 바꿔 읽도록 한다.

심판조서

제63조

기일에 있어서 심판절차에 관해서는 심판의 사무를 행하는 직원이 기일 마다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심판의 사무를 행하는 직원이 이것에 서명날인하는 한편 위원장 또는 심판관이 이것에 인인(認印)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의 사무를 행하는 직원은 서명날인에 대신하여 기명날인할 수 있다.

1. 심판절차를 행한 연월일
2. 심판에 참석한 위원장, 위원, 심판관, 심판의 사무를 행하는 직원 및 심사관의 관명 및 피심인, 대리인, 속기사 및 통역인의 성명
3. 피심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그 취지
4. 심판을 공개하지 않을 때에는 그 취지 및 이유
5. 심신한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성명 및 이들이 선서하지 않을 때에는 그 취지 및 이유
6. 증거조사의 청구 기타의 신청
7. 심사관, 피심인 또는 대리인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진술의 요지 및 참고인, 감정인 또는 피심인본인의 심신 및 진술의 요지(속기록 또는 서면을 인용하여 이것에 대신할 수 있다)
8. 취조한 서류 또는 물건의 표목(標目)
9. 위원회, 위원장 또는 심판관이 행한 결정 및 기타의 신도(申渡)사항
10. 위원장 또는 심판관이 기재를 명한 사항

조서에의 인용

제64조

① 제60조제2항 또는 전조에 의한 조서에는 서면, 사진 기타 위원장 또는 심판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을 인용하고, 이것을 조서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또는 심판관은 전항의 속기록에 인인(認印)하여야 한다.

속기록

제65조

심판에 입회한 속기사는 기일마다 속기록을 작성하고 이것에 서명날인하여 위원회 또는 심판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에 대신하여 기명날인할 수 있다.

제3절 심결안 및 심결

심결안의 작성

제66조

심판관은 심판절차를 종결한 후 30일 이내에 심결안을 작성하고 이것을 사건기록과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고 한편 심결안의 등본을 피심인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하는 것으로 한다.

심결안의 기재사항

제67조

심결안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한 구분에 응하여 당해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심결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사료하는 경우 명하여야 할 조치의 내용 및 사실, 증거 및 법령의 적용
2.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심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사료하는 경우(다음 호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 그 취지 및 사실, 증거 및 법령의 적용
3. 심판개시결정의 때까지 법 제54조제1항에 규정하는 행위 또는 독점적 상태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다고 사료하는 경우 그 취지 및 그 이유
4. 법 제5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심결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사료하는 경우 납부명령하여야 할 과징금액 및 사실, 과징금의 계산의 기초, 증거 및 법령의 적용

심결안에 대한
이의신청

제68조

피심인 또는 대리인은 심결안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주간 이내에 위원회에 대해 문서에 의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진술의 신청

제68조의2

① 피심인 또는 그 대리인은 법 제53조의2의2의 규정에 의해 진술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조의 기간이 경과하는 날까지 위원회에 대해 그 취지 및 진술의 요지를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진술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는 전조의 기간이 경과한 후 지체없이 진술청취의 기일을 지정하고 한편 진술청취의 일시, 장소 기타 필요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피심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는 것으로 한다.

진술청취의 실시

제68조의3

① 진술청취의 기일에는 피심인 또는 그 대리인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문서에 기초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한다.

심결안에 따른
심결

- ② 진술청취에 관해서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직원이 진술된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한편 위원장이 이것에 인인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지정하는 직원은 서명날인에 대신하여 기명날인할 수 있다.
- ③ 제35조, 제36조제3항 및 제37조의 규정은 진술청취에 준용한다.

제69조

- ① 위원회는 제68조의 기간을 경과한 후 (법 제53조의2의2의 규정에 의해 진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후)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사건기록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이의신청서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해 청취한 진술에 기초하여 심결안을 조사한 결과 심결안을 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바로 심결안의 내용과 같은 심결을 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조사결과, 위원회가 이의신청 혹은 진술을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심결안의 내용과 다른 심결을 하거나 또는 사건에 대해 스스로 심판을 열거나 혹은 심판관에 대하여 다시금 심리하여야 할 점을 지시하여 심판절차의 재개를 명할 수 있다.

심결안제 출 후에
있어서 심판절차
의 재개

제70조

위원회는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심판절차의 재개를 명하는 취지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의 등본을 피심인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심결서

제71조

- ①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해 심결을 하는 경우 (다음 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법 제5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심결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에 규정하는 사항 외에 주문 및 증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②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심판개시결정시까지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행위 또는 독점적 상태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여 심결을 하는 경우에는 주문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③ 법 제48조4항 또는 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해 심결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에 규정하는 사항 외에 주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④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심결을 하는 경우에는 주문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⑤ 심결서의 등본(謄本)은 피심인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환송판결의 확정
후에 있어서 심판
절차

제72조

- ① 위원회는 법 제81조제3항 또는 법 제83조에 의한 사건의 환송이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심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법 제83조에 의한 사건의 환송이 있는 경우 심판을 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바로 심결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경우 환송후의 심판절차를 심판관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부칙

1.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 공정취인위원회심판규칙(1950년 공정취인위원회규칙제2호)는 폐지한다.
3. 이 규칙은 시행 당시에 심사 또는 심판중의 사건에 적용한다. 다만 이미 행한 절차의 효력을 방해하지 않는다.

부칙(1962년 공정취인위원회 규칙제6호)

1.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칙은 이 규칙의 시행전에 이루어진 심사관 및 심판관의 처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1971년 공정취인위원회 규칙제3호)

1.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 심사관증에 대해서는 아직 당분간만 개정전의 양식에 의한 것도 사용할 수 있다.

부칙(1977년 공정취인위원회 규칙제3호)

1. 이 규칙은 사적독점의금지및공정거래의확보에관한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77년 법률제63호)의 시행일(1977년12월2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전의 공정취인위원회의 심사 및 심판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한 절차는 개정후의 공정취인위원회의 심사및심판에관한규칙(이하 「신규칙」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이 규칙의 시행일전에 피심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심결안의 등본이 송달된 것 가운데 시행일 전일까지 심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신규칙 제68조의 2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동조 중 「전조의 기간」으로 된 것은 「공정취인위원회의 심사및심판에관한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1977년 공정취인위원회규칙제3호)」의 시행일부터 2주간으로 한다.

부칙(1981년 공정취인위원회규칙제3호)

이 규칙은 1981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년 공정취인위원회규칙제3호)

이 규칙은 행정기관의 휴일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198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년 공정취인위원회규칙제7호)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년 공정취인위원회규칙제7호)

이 규칙은 199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년 공정취인위원회규칙제4호)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양식 제1호]

(첫째 장)

<u>審 査 官 證</u>			
寫 眞	第	號	
	平 成	年	月 日發行
(所 屬)			
(官 職)	(氏 名)		
		年 月 日 生	
<p>上記의 者는 別記事件에 대해 「私的獨占의禁止및公正取引의確保에關한法律」 第46條第1項의 處分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 同法 第4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해 指定된 審査官임을 證明한다.</p>			
공정취인위원회			인

7cm

(둘째 장)

審 査 官 의 權 限

審査官은 다음 各號의 處分을 할 수 있다.

- 1 事件關係人 또는 參考人에게 出頭를 命하여 審訊하거나 또는 이들로부터 意見 혹은 報告를 徵求하는 것
- 2 鑑定人에게 出頭를 命하여 鑑定하도록 하는 것
- 3 帳簿書類 其他 物件의 所持有에 대해 當該物件의 提出을 命하거나 提出物件을 留置하는 것
- 4 事件關係人の 營業所 기타 必要한 場所에 出入하여 業務 및 財産의 狀況, 帳簿書類 其他 物件을 檢査하는 것

上記의 處分에 應하지 않을 경우의 法律上 制裁

上記 第1號의 경우에 出頭하지 않거나 陳述하지 않거나 虛僞의 陳述을 하거나 또는 報告를 하지 않거나 혹은 虛僞의 보고를 한 者, 第2號의 경우에 出頭하지 않거나 鑑定을 하지 않거나 또는 虛僞의 鑑定을 한 者, 第3號의 경우에 物件을 提出하지 않는 者는 20만엔 以下の 罰金, 第4號의 경우에 檢査를 拒否하거나 妨害 또는 忌避한 者는 6월 以下の 懲役 또는 20만엔 以下の 罰金에 處할 수 있다.

7cm

(셋째 장)

[事件名]

平成 年 (査) 第 號

에 대한 건

審査官 (氏 名)

審査官指定日

平成 年 月 日

11cm

7cm

[양식 제2호]

審判節次開始請求書

平成 年 月 日

公正取引委員會 殿

住所(電話番號)

氏名 또는 名稱 및 代表者의 氏名 인

平成 年 月 日의 納付命令에 不服이 있으므로 私的獨占의禁止및公正去來의 確保에關한法律 第48條의2 第5項의 規定에 의해 審判節次의 開始를 請求합니다.

記

- 1 當該 納付命令의 表示
- 2 審判節次 開始請求의 理由

備考 用紙의 크기는 日本工業規格 B5로 한다.